

「2026 국제광융합엑스포(24th PHOTONICS KOREA)」
광융합산업 신기술·우수제품 개발 업체 및 유공자
산업통상부장관 표창·상장 대상자 모집 공고

광융합산업체(광통신, 광조명, 광의료·바이오 등)를 대상으로 신기술 및 우수 제품 개발에 노력한 업체와 광융합산업 육성·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사 기 진작과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4일
산업통상부장관

1 표창·상장 개요

가. 훈격 및 규모 :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5점, 상장 4점

나. 포상시기 : '26. 10. 28.(수),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

다. 모집대상 및 후보자 요건

구 분	대 상	후보자 요건
표 창	광융합산업 육성·발전 유공자	광융합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육성·발전에 공적을 쌓은 자로서, 소속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
상 장	광융합산업 신기술·우수제품 개발 업체	광융합산업 8대 분야 제품(기술) 개발 업체 * 8대 분야 : 광통신, 광조명, 광의료·바이오, 광융합정밀기기, 광소재·부품, 광영상정보, 광결상정보, 광에너지

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신청절차

공고 대상자 모집 (본회 홈페이지) 8. 14.(목) ~ 9. 2.(수)	신청서 접수 → 이메일 접수 후 우편 또는 현장 제출 ~ 9. 2.(수) 1800 限	사전검토(요건심사) → 신청서류 검토 (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확인) ~ 9. 4.(금)	심사위원회 개최 → 서면평가 (정량·정성 평가) 9. 7.(월)
후보자 선정 최종 후보자 선정 9. 8.(화)	후보자 상신 → 최종 후보자 상신 ~ 9. 9.(수)	결과 확정 → 최종 대상자 확정 별도안내	시상식 → 2026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 10. 28.(수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평가기준

○ 평가항목

구 분		평가항목		배점
표 창			개인역량 및 전문성	30
			관련업무 수행 실적	30
			광융합산업 발전 기여도	40
			합 계	100
구 분		평가항목		배점
상 장	기술(제품) 개발 수준(40)	신기술(제품) 개발 정도		20
		신기술(제품) 차별성(창의성)		20
	사업성 및 신뢰성 수준(20)	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		10
		인증, 특허출원 등 사업성		10
	경쟁력 및 파급효과(40)	개발 기술(제품)의 경쟁력		20
		관련 산업 파급효과		20
			합 계	

○ 평가 방법(공통)

-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, 평가위원의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결과, 70점 이상인 경우 '추천 가능 대상'으로 분류하고 이중 상위 득점 순으로 '최종 후보자' 선정
- 동일 점수일 경우, '2026 국제광융합엑스포' 참여도가 높은 기업(관) 우대

3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가.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대통령.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<예외> 추가수공기간의 적용
 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*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
 *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·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
 (단,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'가'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)

나. 재포상 금지 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(부문)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 -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대통령.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,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 - ※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
-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 - 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
다. 신청(추천)제한

- 중복수여의 금지(상훈법 제4조),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(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2) 준수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(기관)

· 수사 중이거나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 ·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·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·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·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·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·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·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·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(단체 포함)
 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 - ※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·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 · 「임원」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·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(사업장 등기부 등본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」을 통해 확인)
 ·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
 ·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 ·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·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(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)
 ·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· 다만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·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·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(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)
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 :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 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그 임원
 - ※ 다만,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
-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-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기존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(단체포함)
- 기타 자세한 사항은「상훈법」, 「202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, 「2026년도 산업통상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 참고

4

신청접수 및 문의처

가. 신청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8. 13.(목) ~ 9. 2.(수) 18:00 限
- 신청양식 :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홈페이지(www.kapid.org) 공지사항 다운로드
- 제출서류
 - (표창) 붙임1. 표창 신청서 PDF(날인) 및 한글파일 각 1부
 - (상장) 붙임2. 상장 신청서 PDF(날인) 및 한글파일 각 1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후, 원본 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- ※ 신청서 접수(방문 또는 우편 접수 포함)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- 접 수 처
 - 이메일 : soo0500@kapid.org
 - 방문(우편)접수: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108번길9,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2층 사무국

나. 문 의 처 :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기업지원실, 062-605-9621

- 붙임 1. 광융합산업 육성·발전 유공자 표창 신청서 양식 1부.
 2. 광융합산업 신기술 우수제품 개발 업체 상장 신청서 양식 1부. 끝.